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증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12. 4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12. 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00. 12. 14)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 제안이유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규정이 있으나 중동소각장 위주로 되어 있어 동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정기출연금은 중동소각장에 한하여 적용(안 제7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 5. 심사결과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1호
의결년월일	2000. 12. 23 (제83회)

제출년월일 : 2000. 12. 4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민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규정이 있으나 중동소각장 위주로 되어 있어 동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정기출연금은 중동소각장에 한하여 적용(안 제7조)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한다. 단, 적용계수는 250백만원 이하로 한다.”를 “하고, 적용계수는 250백만원 이하로 하며, 중동소각장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의”를 “제7조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의”를 “제7조의”로 한다.

부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u>제6조의</u>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별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u>제7조의</u> ..... ..... ..... .....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① <u>제6조의</u> 규정에 의 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생략)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① <u>제7조의</u> ..... ..... ..... ..... ②(현행과 같음)